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66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최기상 · 안도걸 · 장종태
이성윤 · 김 윤 · 김승원
권칠승 · 황운하 · 이해식
오기형 의원(10인)

제안이유

가상자산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 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현행법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의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고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조세 회피, 밀수입이나 환치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외국환에 준하여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

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경간 가상자산의 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함(안 제3조제1항제21호 및 제22호).

다. 가상자산거래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가치를 국경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항제23호).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알선·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가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함(안 10조).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경 간 가상자산의 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제3조제1항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2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23. “가상자산거래”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가치를 국경 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4.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란 국경 간 가상자산거래의 중개·알선·대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하려는”을 “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를 업으로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 및 가상자산거래업무의 등록을 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

거래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업무와 가상자산거래업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국환중개업무”를 “외국환중개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로, “(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을 “(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으로, “외국환중개업무를”을 “외국환중개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중개회사”를 “외국환중개회사 또는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환중개업무”를 “외국환중개업무와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로, “외국환중개회사”를 “외국환중개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하려는”을 “하거나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를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외

국환중개회사”를 “외국환중개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로 한다.

3. 가상자산거래중개업: 가상자산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가상자산 거래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가상자산거래중개 업무에 관한 영업

다만, 가상자산거래중개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를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와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이하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은 가상자산거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2. 거래 정보를 조작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행위
3. 내부 거래 정보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11조제1항 중 “같다)의”를 “같다)과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가상자산

거래중개회사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이”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과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를 “경우(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중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또는 가상자산거래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외국환중개업무”를 “외국환중개업무나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업무”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이동”을 “이동, 가상자산거래”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장,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동”을 “이동, 가상자산거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외국환거래의”를 “외국환거래 등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업무 및 가상자산거래업무”로, “지급 또는 수령”을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거래”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업무를 한 자

제27조의2제1항제1호 중 “외국환업무”를 각각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 자산거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환중개업무”를 각각 “외국환중개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로 한다.

제30조 중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을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상자산”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환중개업무”를 각각 “외국환중개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조(적용 대상)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국경 간 가상자산의 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u>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① ----- -----. 1. ~ 20. (현행과 같음) 21. <u>“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u> 22. <u>“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u> 23. <u>“가상자산거래”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가치를 국경 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u> 24. <u>“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란</u>

② (생략)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
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략)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
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
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국경 간 가상자산거래의 중개
· 알선 · 대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하거
나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업으로 하려는-----

1. ~ 3. (현행과 같음)

④ -----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 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 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 및 가상자산거래업무의 등록을 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사업자”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사업자-----

⑦ -----외국환업무와 가상자산거래업무-----

-----. 다만, 가상자산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

거래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외국환중개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

1.·2. (현행과 같음)

3. 가상자산거래중개업: 가상자산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가상자산거래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

다)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다)는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외국환중개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를-----.

③ 외국환중개회사 또는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

1. 2. (현행과 같음)

④ -----외국환중개업무와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외국환중개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

-----. 다만, 가상자산거래중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u>하려는</u>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외국환중개회사의</u>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u>외국환중개회사</u>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	<u>개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 -----<u>하거나</u> <u>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가</u> 외국에서 <u>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를 하려는</u>----- -----. ⑥ (현행과 같음) ⑦ -----<u>외국환중개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u>----- -----. 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u>외국환중개회사</u>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와 <u>가상자산거래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u> (이하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이라 한다)-----
---	--

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신설>

-----.

-----.

② (현행과 같음)

③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은 가상자산거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2. 거래 정보를 조작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행위
3. 내부 거래 정보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를 해치는 행위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① -----

-----같다)과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과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 환업무를 한 <u>경우</u>	4. ----- ----- <u>경우(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만 해당한다)</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5의2. 제8조제6항에 따른 <u>외국 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 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 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 니한 경우</u>	5의2. ----- <u>외국 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 업무취급업자 및 가상자산거 래사업자</u> ----- ----- -----
5의3. (생략)	5의3. (현행과 같음)
5의4.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 에도 불구하고 <u>전문외국환업 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 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 우</u>	5의4. ----- ----- <u>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 또는 가상자산거래 사업자</u> ----- -----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u>외국 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 지 아니한 경우</u>	6. ----- <u>외국 환중개업무나 가상자산거래중 개업무</u> ----- ----- -----
7. ~ 14. (생략)	7. ~ 1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 가가 취소된 자(제1항에 따라	④ ----- -----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 업무를 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다.

⑤ (생략)

제20조(보고·검사)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외국
환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업무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보고·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외국환업
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거래사
업자등-----

③ _____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

-----외국환업무취급기
관등,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

-----.

④ -----

-----외국환업무취
급기관등,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등,-----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

-----이동, 가상자산거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

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
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
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
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
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생략)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
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
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
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
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
탁할 수 있다.

-----.

② -----

-----이동, 가상자산거래-----

-----.

제22조(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
장)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등,-----

② (생략)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u>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외국환업무와</u>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u>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u>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등,</u>----- ----- ----- ----- ----- -----.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외국환</u> <u>업무 및 가상자산거래업무</u>---- ----- ----- ----- -----<u>지급, 수령 또는</u> <u>가상자산거래</u>----- ----- -----.
---	--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제27조(벌칙)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업무를 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벌칙) ① -----

-----.

-----.

1. -----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
산거래업무-----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
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
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
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
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
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
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
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를 포함한다)

3. (생략)

② (생략)

제30조(몰수·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
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
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업무-----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업무-----

2. -----

-----외국환중개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

외국환중개업무 또는 가상자

산거래중개업무-----

-----외국환중개업무 또는

가상자산거래중개업무-----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몰수·추징) -----

-----부동

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상자산-

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u>외국환업무</u> 를 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u>외국</u> <u>환중개업무</u>를 한 자 또는 같 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u>외국</u> <u>환중개업무</u>를 한 자 3. ~ 6. (생략) ② ~ ⑤ (생략)	----- -----. 제32조(과태료) ① ----- ----- ----- -----. 1. ----- ----- -----<u>외국환업무</u> <u>또는 가상자산거래업무</u>----- -- 2. ----- ----- -----<u>외국</u> <u>환중개업무 또는 가상자산거</u> <u>래중개업무</u>-----<u>외국</u> <u>환중개업무 또는 가상자산거</u> <u>래중개업무</u>----- --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